

2023 법인세 신고대비
개정 및 실무이슈

HIT THE SPOT SERIES 1



법인세신고시
주요 개정사항



YOUR BEST HRD PARTNER
씨에프오아카데미
www.cfoid.com



TEL (02)

501-2322

FAX (02)

561-6581

법인세 신고시 주요 개정사항

I 2021년 주요 개정사항

1. 이월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법인법 § 13 · § 76의13)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손금 이월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기간) 10년 ○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업 : 소득의 60% - 중소기업 · 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 : 소득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 15년 ○ (좌 동)

[개정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

2.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조특법 § 144①)

법인세법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다.

3. 청년의 판단과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관한 유권해석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직전과세연도 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조특, 서면-2020-법인-6004, 2021.03.15.). 따라서 고용중대세액공제액 계산시 청년에 대한 판단기준과 청년감소 감면분추가 납부세액 계산시의 청년에 대한 판단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4. 투자세액공제를 전면개정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 24, 조특령 § 21 신설)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및 공제율 (조특법 § 24, 조특령 § 21)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 (§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투자세액공제” 로 통합 · 단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모든 개인사업자 · 법인(소비용 서비스업, 부동산임대 · 공급업 제외) ○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 제외 (현행: 포지티브 ⇒ 개정: 네거티브 방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중소기업</th> <th colspan="3">중견기업</th> </tr> <tr> <th>위기지역</th> <th>신규상장</th> <th>일반</th> <th>위기지역</th> <th>신규상장</th> <th>일반</th> </tr> </thead> <tbody> <tr> <td>공제율</td> <td>10%</td> <td>4%</td> <td>3%</td> <td>5%</td> <td>4%</td> <td>2% (수도권1%)</td> </tr> </tbody> </table>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위기지역	신규상장	일반	위기지역	신규상장	일반	공제율	10%	4%	3%	5%	4%	2% (수도권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 25)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위기지역	신규상장	일반	위기지역	신규상장	일반																									
공제율	10%	4%	3%	5%	4%	2% (수도권1%)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중소기업</th> <th>중견기업</th> <th>대기업</th> </tr> </thead> <tbody> <tr> <td>① 연구시험용 및 직업 훈련용 시설</td> <td>7%</td> <td>3%</td> <td>1%</td> </tr> <tr> <td>② 에너지절약시설</td> <td>7%</td> <td>3%</td> <td>1%</td> </tr> <tr> <td>③ 환경보전시설</td> <td>10%</td> <td>5%</td> <td>3%</td> </tr> <tr> <td>④ 근로자복지증진시설</td> <td>10%</td> <td>5%</td> <td>3%</td> </tr> <tr> <td>⑤ 안전시설</td> <td>10%</td> <td>5%</td> <td>1%</td> </tr> <tr> <td>⑥ 생산성향상시설</td> <td>7% (10%)</td> <td>3% (5%)</td> <td>1% (2%)</td> </tr> </tbody> </table>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① 연구시험용 및 직업 훈련용 시설	7%	3%	1%	② 에너지절약시설	7%	3%	1%	③ 환경보전시설	10%	5%	3%	④ 근로자복지증진시설	10%	5%	3%	⑤ 안전시설	10%	5%	1%	⑥ 생산성향상시설	7% (10%)	3% (5%)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비품 등 - 건물, 구축물, 차량 등에 해당하나, 종전 특정시설* 또는 업종별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예외 인정(공제 허용) * 연구 · 인력개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 시설 등 ** (건설업) 포크레인 등 중장비, (도소매 · 물류업) 창고 등 물류시설, (운수업) 차량 · 운반구 · 선박, (관광숙박업)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 등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① 연구시험용 및 직업 훈련용 시설	7%	3%	1%																												
② 에너지절약시설	7%	3%	1%																												
③ 환경보전시설	10%	5%	3%																												
④ 근로자복지증진시설	10%	5%	3%																												
⑤ 안전시설	10%	5%	1%																												
⑥ 생산성향상시설	7% (10%)	3% (5%)	1% (2%)																												
* 대기업 '20년, 중소 · 중견기업 21년까지 공제율 한시 상향																															

법인세 신고시 주요 개정사항

현행				개정								
㉠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세액공제 (§ 25의4)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중소기업</th> <th>중견기업</th> <th>대기업</th> </tr> </thead> <tbody> <tr> <td>공제율</td> <td>6%</td> <td>3%</td> <td>1%</td> </tr> </tbody> </table>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제율	6%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당기분 기본공제(㉠)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 (기본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 · 일반 투자분 : 중소 10%, 중견 3%, 대 1%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분 : 중소 12%, 중견 5%, 대 3% - (추가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공제율(모든 기업 3%) · 추가공제액 한도 : 기본공제액의 200%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제율	6%	3%	1%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세액공제 (§ 25의5)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중소기업</th> <th>중견기업</th> <th>대기업</th> </tr> </thead> <tbody> <tr> <td>공제율</td> <td>10%</td> <td>7%</td> <td>5%</td> </tr> </tbody> </table>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제율	10%	7%	5%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제율	10%	7%	5%									
㉢ 초연결 네트워크구축 시설투자세액공제 (§ 25의7)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모든 기업</th> </tr> </thead> <tbody> <tr> <td>공제율</td> <td>최대 3% = 2% + 최대 1% (전년대비 고용증가율 × 1/5)</td> </tr> </tbody> </table>				구분	모든 기업	공제율	최대 3% = 2% + 최대 1% (전년대비 고용증가율 × 1/5)					
구분	모든 기업											
공제율	최대 3% = 2% + 최대 1% (전년대비 고용증가율 × 1/5)											

[개정이유]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시기] '20·'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적용 허용(기업은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투자자산별로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구분하여 선택하는 것은 불인정)

II 2022년 주요 개정사항중 2021년 소급적용 개정(안)

1. 일자리 창출·유지 지원 -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29의7)

현행					개정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모든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_____ ○(요건) 상시근로자 수 증가 _____ ○(공제금액)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공제금액					□수도권 외 지역 취약계층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좌 등) _____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공제금액 100만원 한시 상향('21~'22년)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중소</th> <th rowspan="2">중견</th> <th rowspan="2">대</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r> </thead> <tbody> <tr> <td>청년·장애인 등</td> <td>1,100</td> <td>1,200</td> <td>800</td> <td>400</td> </tr> <tr> <td>기타</td> <td>700</td> <td>700</td> <td>45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중소		중견	대	수도권	지방	청년·장애인 등	1,100	1,200	800	400	기타	700	700	450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중소</th> <th colspan="2">중견</th> <th colspan="2">대</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h>수도권</th> <th>지방</th> <th>수도권</th> <th>지방</th> </tr> </thead> <tbody> <tr> <td>청년·장애인 등</td> <td>1,100</td> <td>1,300*</td> <td>800</td> <td>900*</td> <td>400</td> <td>500*</td> </tr> <tr> <td>기타</td> <td>700</td> <td>700</td> <td>450</td> <td>450</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중소		중견		대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장애인 등	1,100	1,300*	800	900*	400	500*	기타	700	700	450	450	-	-
구분	중소		중견	대																																																			
	수도권	지방																																																					
청년·장애인 등	1,100	1,200	800	400																																																			
기타	700	700	450	-																																																			
구분	중소		중견		대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장애인 등	1,100	1,300*	800	900*	400	500*																																																	
기타	700	700	450	450	-	-																																																	
○(공제기간) 중소·중견 3년 대기업 2년 _____ ○(사후관리)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기간 공제 배제 및 공제세액 추징 _____ ○(적용기한) '21.12.31.					* '21~'22년 고용증가분에 한시 적용 ○(좌 등) _____ ○'24.12.31.																																																		

[개정이유] 취업 취약계층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1.12.31. 및 '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 적용

법인세 신고시 주요 개정사항

2. 중소기업 · 고령자 · 농어민 등 지원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조특법 § 8의4)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소득세법 § 85의2, 법인세법 §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한 소득세 · 법인세 환급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 (직전 과세연도 및직전전 과세연도)으로 확대 – 결손금 소급공제 순서 : 직전전 과세연도의 납부세액 (소득세 · 법인세)에서 먼저 공제

[개정이유]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적용시기] '21.12.31. 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